

●● 산업체 소식

국영무역으로 들어온 수입콩 사후관리에 '허점'(3)



배경근 편집위원

1) 1kg 1,400~2,200원선...“값 낮아 음식점 등 구매 앞다퉀”35kg 단위로 포장돼 거래...포대같이 의심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된 수입콩의 사후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우려는 결손 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수입콩 사후 관리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정상품으로 유통되거나 콩나물콩이 일반 대두로 용도가 변경돼 거래되더라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현재 식용 수입콩(대두)을 해외에서 사들일 때 품위 규격과 제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 최종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자신들의 물량을 해상 운송 형태로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구까지 갖고 오게 된다.

문제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aT에 따르면 국영무역 수입콩이 현지 상품화 과정에서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엔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국가로 되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해상운송 때 온습도 관리 미흡으로 콩이 물기에 노출되거나 비에 젖는 등의 피해(결로현상)를 입은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엔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대신 aT는 미리 계약한 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액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만큼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aT의 한 관계자는 “운송과정에서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난 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면서 “가입 보험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면 해당 물량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넘어가도록 돼 있어 aT의 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보험 처리한 수입콩은 aT 소유분이 아니므로 이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콩을 비롯해 마늘·양파·고추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대부분 농산물의 국영무역을 전담하는 대행기관으로서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T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

해선 보험금 수령을 통한 손실보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데 반해 해당 결손품을 폐기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수입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식용콩 자급률은 29.1% 수준. 근본적으로 국산콩이 국내 콩 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수입콩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더욱이 콩은 결손품이더라도 가공처리를 할 경우 얼마든지 정상품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콩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중에서 정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말고도 결손품 수입콩 처분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은 또 있다. 용도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입콩은 일반 가공용 대두와 콩나물용 콩으로 용도를 정해 반입되고 국내에서도 구분 유통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T는 보험 처리한 결손품 수입콩에 대해선 소유권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결손품이 만일 콩나물용 콩에서 일반 가공용 대두로 바뀌어 쓰이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국민 혈세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수입콩 결손품의 유통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현재 식용 수입콩(대두)의 관세는 487%. 하지만 국영무역으로 도입되는 수입콩 가운데 대부분은 5%의 관세만 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다.

따라서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T가 저율관세로 수입한 물량의 인수를 거부하고 해당 물량의 국내 유통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정부의 수입콩 사후 관리 단속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리는 것은 물론 정부가 들여온 저율관세 수입콩을 손쉽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판매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aT는 국영무역과 관련, 올 초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년 국영무역 사업안내-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이해'를 통해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면서 "특히 국내 자급도가 낮은 참깨·콩·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시장 왜곡사례를 국영무역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수입콩의 사후 관리에 빈틈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담기관인 aT가 국영무역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대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aT, 수입콩 유통관리 개선 대책마련 나서

“물량 공급받는 직배업체들까지 관리 강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영무역 수입콩의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콩 취급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유병렬 aT 곡물사업처장은 “〈농민신문〉의 보도를 계기로 차제에 수입콩 사후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처장은 “현재 수입콩 실수요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콩연구회

당초 용도에 맞게 가공 처리하고 있는지를 1년에 네차례 무작위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실수요단체는 물론 aT로부터 직접 물량을 공급받는 직배업체들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입 농산물 중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상품성이 극히 떨어져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내 반입을 걱정할 상

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처장은 그러면서 “콩나물용 콩은 일부 물에 젖더라도 일반 식용 대두로는 사용할 수 있어 보험사가 자체 손실 만회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는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일부 물량이 그런 방식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